

대구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단1070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문은정,정재진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95,000,000원과 그 중 175,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1. 3.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3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피고 B의 채권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와 친구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1. 3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원고의 아들 D은 피고 B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E’에 근무하였다.

피고 B는 2016.경부터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받아, 이를 담보로 일정금원을 대출받은 후 저렴하게 임대하면 1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아파트 H호 등 전국에 걸쳐 460여세대의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2018.경부터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 친, 인척을 비롯한 직원들 명의로 매입한 아파트에 대한 사채이자 및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던 가운데, 피고 B는 2019.

9.경 D을 통해 원고에게 2019. 11.경 회사에 거액이 들어오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9. 20. 피고 B에게 금 175,000,000원을 빌려주었던바, 피고 B는 2020. 1.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위 원금에 대한 이자금으로 원고가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 총합계금 금

33,130,680원 중에 금 20,000,000원을 대납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195,0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175,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및 무자력

피고 B는 2019. 11. 30.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면탈,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구인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21.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가액배상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2017. 5. 23. 접수 제59607호, 이하, I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2020. 2. 20. 접수 제22168호로 2020. 2. 20.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고 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I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0,000,000원이고 주식회사 I의 2021. 12. 23.자 금융거래정보조회회신에 따르면 2021. 12. 22. 기준 위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이 배상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265,000,000원 정도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130,000,00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액은 35,000,000원(= 265,000,000원 - 100,000,000원 - 130,000,000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35,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는 D으로부터 175,000,000원을 빌렸을 뿐이므로 원고는 채권자가 아니다.

그리고 피고 B는 위 대여금 중 39,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는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 C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사해의 의사나 악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위 피고가 진정하게 성립한 사실을 인정한 갑제1호증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서증을 언급할 때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위 피고에게 2019. 9. 20. 금 175,000,000원을 빌려 준 사실, 위 피고는 2020. 1. 30.까지 위 돈과 이자조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5,000,000원과 그 중 175,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20.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3.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는 원고 또는 D에게 39,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피고 B의 무자력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19. 9. 20. 당시 195,000,000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등에 따르면 별지 1,2,3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9. 11. 30. 당시 피고 B는 금융기관 채무 12,324,892,793원, 임대차보증금 채무 11,624,000,200원 등 총 23,948,892,993원(= 12,324,892,793원 + 11,624,000,2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원고에 대한 위 채무와 기타 개인적인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고의 적극적 재산은 15,127,313,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가 무자력이었던 사실은 명백하다.

2)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여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리고 을제1호증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C이 사해행위에 관한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가액배상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I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들이 위 근저당권피담보채무 1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및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13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사건 부동산을 원물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C에게 그 취소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함이 타당하다.

한편 갑제10,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6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1)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3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 피고 C은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별지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468.0806㎡

2층 452.404㎡

3층 452.404㎡

4층 452.404㎡

5층 452.404㎡

6층 452.404㎡

7층 452.404㎡

8층 452.404㎡

9층 452.404㎡

10층 452.404㎡

11층 452.404㎡

12층 452.404㎡

13층 452.404㎡

14층 452.404㎡

15층 452.40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84.996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 26885㎡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비율 : 1. 26885분의 57.7490

-끝-

[별지 1]

피고 의 채무 내역(2019. 11. 30. 기준)

순번	채권자	채권계좌 등	채무액	비고
1			49,124,433	
2			49,113,612	
3			10,170,253	
4			25,000,000	
5			10,000,000	
6			43,750,000	
7			50,000,000	
8			10,000,000	
9			288,000,000	
10			299,000,000	
11			10,000,000	
12			50,000,000	

순번	채권자	채권계좌 등	채무액	비고
13			73,300,000	
14			20,083,901	
15			41,000,000	
16			43,750,000	
17			45,000,000	
18			33,300,000	
19			50,000,000	
20			16,000,000	
21			47,900,000	
22			72,900,000	
23			41,600,000	
24			27,000,000	
25			4,977,776	
26			511,000,000	
27			65,093,000	
28			35,381,000	

순번	채권자	채권계좌 등	채무액	비고
29			54,096,167	
30			100,000,000	
31			39,500,000	
32			27,000,000	
33			66,600,000	
34			70,800,000	
35			77,000,000	
36			68,700,000	
37			83,300,000	
38			87,500,000	
39			83,300,000	
40			100,000,000	
41			37,000,000	
42			32,900,000	
43			35,400,000	
44			30,600,000	
45			22,200,000	
46			20,800,000	
47			85,400,000	
48			85,400,000	
49			31,200,000	
50			28,750,000	

순번	채권자	채권계좌 등	채무액	비고
51			31,200,000	
52			43,700,000	
53			22,900,000	
54			22,900,000	
55			22,900,000	
56			43,700,000	
57			31,200,000	
58			41,250,000	
59			43,700,000	
60			31,200,000	
61			22,900,000	
62			22,900,000	
63			75,232,023	
64			68,929,966	
65			62,648,732	
66			38,067,822	
67			630,958,807	
68			470,715,301	

순번	채권자	채권계좌 등	채무액	비고
69			39,000,000	
70			6,276,000,000	
71			326,000,000	
72			332,000,000	
73			335,000,000	
			12,324,892,793	

[별지 2]

피고 의 임대차보증금 채무 내역 (2019. 11. 30. 기준)

별지 목록 연번	임차인 성명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보증금(원)	비고
1		2019. 01. 29.	2021. 01. 28.	110,000,000	2021.11.1.자 사실조회회신과
3		2018. 10. 08.	2020. 10. 07.	80,000,000	사실조회회신
4		2018. 11. 09.	2020. 11. 08.	60,000,000	사실조회회신, 갑 제4호증의 4
		2018. 11. 09.	2020. 11. 08.	60,000,000	사실조회회신
		2018. 04. 15.	2020. 04. 14.	100,000,000	사실조회회신
5		2017. 07. 25.	2019. 12. 24.	100,000,000	사실조회회신
		2019. 11. 25.	2021. 11. 24.	80,000,000	사실조회회신
6		2019. 07. 10.	2021. 07. 09.	60,000,000	사실조회회신
7		2016. 09. 19.	2019. 12. 19.	70,000,000	사실조회회신, 갑 제4호증의 7
8		2019. 12. 13.	2020. 12. 11.	18,000,000	사실조회회신
		2019. 12. 13.	2021. 04. 12.	35,000,000	사실조회회신
9		2018. 10. 30.	2020. 10. 29.	80,000,000	사실조회회신
10		2019. 07. 24.	2021. 07. 23.	60,000,000	사실조회회신
		2019. 10. 25.	2021. 10. 24.	60,000,000	사실조회회신
11		2019. 09. 28.	2020. 09. 28.	60,000,000	사실조회회신, 갑 제4호증의 11
13		2019. 09. 20.	2021. 09. 19.	55,000,000	사실조회회신

별지 목록 1) 연번	임차인 성명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보증금(원)	비고
14		2019. 02. 26.	2021. 02. 25.	51,000,000	사실조회회신
15		2017. 01. 06.	2021. 01. 07.	75,000,000	사실조회회신 갑 제5호증의 1
16		2016. 02. 28.	2021. 02. 27.	75,000,000	사실조회회신 갑 제4호증의 16, 갑 제5호증의 2
17		2019. 06. 28.	2021. 06. 28.	180,000,000	사실조회회신
18		2019. 10. 27.	2021. 10. 26.	200,000,000	사실조회회신
19		2018. 02. 23.	2020. 02. 22.	220,000,000	사실조회회신 갑 제5호증의 3
20		2018. 07. 13.	2020. 07. 13.	200,000,000	사실조회회신
21		2018. 04. 27.	2020. 04. 26.	200,000,000	사실조회회신
22		2019. 04. 02.	2021. 04. 02.	125,000,000	사실조회회신
23		2018. 04. 05.	2020. 04. 08.	104,500,000	사실조회회신
24		2016. 8. 13.	2020. 01. 31.	119,500,000	사실조회회신, 갑 제4호증의 24
25		2018. 01. 31.	2020. 01. 30.	120,000,000	사실조회회신, 갑 제4호증의 25
26		2019. 04. 20.	2021. 04. 20.	170,000,000	사실조회회신, 갑 제4호증의 26
27		2018. 05. 20.	2020. 05. 19.	135,000,000	2021.11.1.자 사실조회회신, 갑 제4호증의 27
28		2019. 03. 24.	2020. 03. 23.	160,000,000	사실조회회신
29		2019. 02. 28.	2021. 02. 28.	130,000,000	사실조회회신
30		2020. 02. 17.	2021. 02. 17.	180,000,000	사실조회회신
31		2019. 08. 31.	2023. 08. 30.	150,000,000	사실조회회신
32		2019. 04. 23.	2021. 04. 23.	160,000,000	사실조회회신
33		2019. 03. 29.	2021. 03. 29.	130,000,000	사실조회회신
34		2018. 10. 27.	2020. 10. 26.	170,000,000	사실조회회신
35		2019. 12. 31.	2020. 12. 30.	190,000,000	사실조회회신
		2018. 09. 19.	2020. 09. 18.	190,000,000	사실조회회신
36		2019. 02. 28.	2021. 02. 27.	190,000,000	사실조회회신

별지 목록 7 면번	임차인 성명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보증금(원)	비고
37		2019. 02. 20.	2021. 02. 19.	190,000,000	사실조회회신
		2018. 08. 02.	2020. 08. 01.	195,000,000	사실조회회신
38		2019. 02. 08.	2021. 02. 08.	140,000,000	사실조회회신
39		2019. 02. 28.	2021. 02. 28.	190,000,000	사실조회회신
40		2019. 01. 10.	2021. 01. 09.	200,000,000	사실조회회신
		2019. 07. 10.	2021. 07. 09.	200,000,000	사실조회회신
41		2019. 02. 22.	2021. 02. 21.	180,000,000	사실조회회신
		2019. 02. 22.	2021. 02. 21.	18,000,000	사실조회회신
42		2019. 01. 17.	2021. 01. 16.	140,000,000	사실조회회신
		2019. 01. 10.	2020. 06. 24.	190,000,000	사실조회회신
43		2018. 06. 25.	2020. 06. 24.	190,000,000	사실조회회신
		2019. 01. 10.	2020. 06. 24.	190,000,000	사실조회회신
44		2017. 06. 16.	2023. 06. 14.	130,000,000	사실조회회신 갑 제5호증의 4
45		2019. 07. 14.	2020. 07. 13.	120,000,000	사실조회회신
46		2018. 09. 07.	2020. 09. 06.	162,000,000	사실조회회신
		2019. 09. 30.	2021. 09. 29.	125,000,000	사실조회회신
47		2019. 10. 31.	2021. 10. 30.	125,000,000	사실조회회신
		2018. 10. 19.	2020. 10. 18.	120,000,000	사실조회회신
48		2018. 02. 14.	2020. 02. 13.	135,000,000	사실조회회신 128번
49		2017. 10. 18.	2019. 12. 30.	145,000,000	사실조회회신 132번
		2019. 02. 26.	2021. 02. 25.	160,000,000	사실조회회신
50		2019. 09. 06.	2021. 09. 05.	120,000,000	갑 제5호증의 5
51		2019. 05. 31.	2021. 05. 30.	140,000,000	사실조회회신
52		2018. 06. 26.	2020. 06. 30.	140,000,000	사실조회회신
		2018. 06. 26.	2020. 06. 30.	140,000,000	사실조회회신
53		2018. 11. 30.	2020. 11. 29.	140,000,000	사실조회회신
54		2019. 06. 27.	2021. 06. 26.	110,000,000	사실조회회신
55		2018. 08. 14.	2020. 08. 13.	110,000,000	사실조회회신
56		2019. 02. 28.	2021. 02. 27.	125,000,000	사실조회회신
57		2019. 11. 01.	2021. 10. 31.	130,000,000	사실조회회신
58		2017. 12. 08.	2019. 12. 07.	110,000,000	사실조회회신 156번

별지 목록 1) 연번	임차인 성명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보증금(원)	비고
60		2018. 08. 30.	2020. 08. 29.	150,000,000	사실조회회신
61		2019. 05. 17.	2021. 05. 16.	140,000,000	사실조회회신
62		2019. 01. 31.	2021. 01. 30.	50,000,000	사실조회회신, 갑 제4호증의 62
63		2019. 02. 18.	2021. 02. 17.	50,000,000	사실조회회신, 갑 제4호증의 63
64		2019. 03. 07.	2021. 03. 06.	50,000,000	사실조회회신, 갑 제4호증의 64
65		2019. 04. 13.	2021. 04. 12.	60,000,000	사실조회회신
66		2019. 10. 18.	2021. 10. 17.	50,000,000	사실조회회신
		2019. 03. 03.	2021. 03. 02.	50,000,000	사실조회회신
67		2019. 02. 28.	2021. 02. 27.	50,000,000	사실조회회신
68		2019. 01. 31.	2021. 01. 29.	60,000,000	사실조회회신
69		2019. 03. 13.	2021. 03. 12.	60,000,000	사실조회회신
70		2019. 03. 18.	2021. 03. 17.	50,000,000	사실조회회신
71		2016. 04. 06.	2021. 04. 05.	20,000,000	사실조회회신 갑 제5호증의 6
73		2019. 04. 09.	2021. 04. 08.	60,000,000	갑 제5호증의 7
74		2019. 01. 31.	2021. 01. 30.	50,000,000	사실조회회신
75		2019. 04. 23.	2021. 04. 22.	60,000,000	사실조회회신
76		2019. 03. 15.	2021. 03. 14.	60,000,000	사실조회회신
77		2019. 11. 29.	2021. 11. 28.	401,000,000	사실조회회신
		2019. 11. 29.	2020. 02. 28.	400,000,000	사실조회회신
79		2018. 06. 15.	2020. 06. 14.	330,000,000	사실조회회신
80		2017. 11. 24.	2019. 11. 23.	400,000,000	사실조회회신, 갑 제4호증의 80
			총 임차보증금채무	11,624,000,200	

[별지 3]

피고 소유의 부동산 및 그 가액 (2019. 11. 30. 기준)

순번	주소	시세평가원 당시 시가	종가
1		102,500,000	갑 제4호증의 1 및 갑 제8호증의 1
2		7,500,000	갑 제4호증의 2 및 갑 제8호증의 2
3		112,500,000	갑 제4호증의 3 및 갑 제8호증의 3
4		112,500,000	갑 제4호증의 4 및 갑 제8호증의 3
5		112,500,000	갑 제4호증의 5 및 갑 제8호증의 3
6		64,000,000	갑 제4호증의 6 및 갑 제8호증의 4
7		64,000,000	갑 제4호증의 7 및 갑 제8호증의 4
8		64,000,000	갑 제4호증의 8 및 갑 제8호증의 4
9		177,500,000	갑 제4호증의 9 및 갑 제8호증의 5
10		91,000,000	갑 제4호증의 10 및 갑 제8호증의 6
11		91,000,000	갑 제4호증의 11 및 갑 제8호증의 6
12		91,000,000	갑 제4호증의 12 및 갑 제8호증의 6
13		78,000,000	갑 제4호증의 13 및 갑 제8호증의 7
14		91,000,000	갑 제4호증의 14 및 갑 제8호증의 6
15		91,000,000	갑 제4호증의 15 및 갑 제8호증의 6
16		91,000,000	갑 제4호증의 16 및 갑 제8호증의 6
17		297,500,000	갑 제4호증의 17 및 갑 제8호증의 8
18		297,500,000	갑 제4호증의 18 및 갑 제8호증의 8
19		297,500,000	갑 제4호증의 19 및 갑 제8호증의 8
20		297,500,000	갑 제4호증의 20 및 갑 제8호증의 8
21		297,500,000	갑 제4호증의 21 및 갑 제8호증의 8
22		192,500,000	갑 제4호증의 22 및 갑 제8호증의 9
23		192,500,000	갑 제4호증의 23 및 갑 제8호증의 9
24		192,500,000	갑 제4호증의 24 및 갑 제8호증의 9
25		192,500,000	갑 제4호증의 25 및 갑 제8호증의 9
26		196,500,000	갑 제4호증의 26 및 갑 제8호증의 1
27		196,500,000	갑 제4호증의 27 및 갑 제8호증의 1
28		192,500,000	갑 제4호증의 28 및 갑 제8호증의 2
29		192,500,000	갑 제4호증의 29 및 갑 제8호증의 2
30		192,500,000	갑 제4호증의 30 및 갑 제8호증의 2
31		192,500,000	갑 제4호증의 31 및 갑 제8호증의 2
32		192,500,000	갑 제4호증의 32 및 갑 제8호증의 2
33		192,500,000	갑 제4호증의 33 및 갑 제8호증의 2
34		243,750,000	갑 제4호증의 34 및 갑 제8호증의 15
35		217,000,000	갑 제4호증의 35 및 갑 제8호증의 14
36		217,000,000	갑 제4호증의 36 및 갑 제8호증의 14
37		217,000,000	갑 제4호증의 37 및 갑 제8호증의 14
38		217,000,000	갑 제4호증의 38 및 갑 제8호증의 14
39		217,000,000	갑 제4호증의 39 및 갑 제8호증의 15
40		217,000,000	갑 제4호증의 40 및 갑 제8호증의 14
41		217,000,000	갑 제4호증의 41 및 갑 제8호증의 15
42		217,000,000	갑 제4호증의 42 및 갑 제8호증의 14
43		217,000,000	갑 제4호증의 43 및 갑 제8호증의 14
44		300,000,000	갑 제4호증의 44 및 갑 제8호증의 17
45		121,500,000	갑 제4호증의 45 및 갑 제8호증의 18
46		175,000,000	갑 제4호증의 46 및 갑 제8호증의 19
47		105,000,000	갑 제4호증의 47 및 갑 제8호증의 20
48		105,000,000	갑 제4호증의 48 및 갑 제8호증의 20
49		139,000,000	갑 제4호증의 49 및 갑 제8호증의 21
50		68,750,000	갑 제4호증의 50 및 갑 제8호증의 22
51		88,500,000	갑 제4호증의 51 및 갑 제8호증의 23
52		88,500,000	갑 제4호증의 52 및 갑 제8호증의 23
53		88,500,000	갑 제4호증의 53 및 갑 제8호증의 23
54		88,500,000	갑 제4호증의 54 및 갑 제8호증의 23
55		88,500,000	갑 제4호증의 55 및 갑 제8호증의 23

2020. 2. 21

56		88,500,000	갑 제4호증의 66 및 갑 제4호증의 67
57		88,500,000	갑 제4호증의 67 및 갑 제4호증의 68
58		88,500,000	갑 제4호증의 68 및 갑 제4호증의 69
59		88,500,000	갑 제4호증의 69 및 갑 제4호증의 70
60		88,500,000	갑 제4호증의 70 및 갑 제4호증의 71
61		88,500,000	갑 제4호증의 71 및 갑 제4호증의 72
62		88,500,000	갑 제4호증의 72 및 갑 제4호증의 73
63		88,500,000	갑 제4호증의 73 및 갑 제4호증의 74
64		88,500,000	갑 제4호증의 74 및 갑 제4호증의 75
65		832,000,000	갑 제4호증의 77 및 갑 제9호증의 3

66		500,000,000	갑 제4호증의 78 및 갑 제9호증의 4
67		500,000,000	갑 제4호증의 79 및 갑 제9호증의 4
68		790,000,000	갑 제4호증의 80 및 갑 제9호증의 5
69		748,000,000	갑 제4호증의 81 및 갑 제9호증의 6
70		881,000,000	갑 제4호증의 82 및 갑 제8호증의 5
71		72,000,000	갑 제4호증의 83 및 갑 제4호증의 83
72		375,000,000	갑 제4호증의 84 및 갑 제4호증의 84
73		740,313,000	갑 제4호증의 85 및 갑 제8호증의 28
		15,127,313,000	

